

의안번호	2200232
의 퇴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4. 7. 11.
추계번호	24D055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신설 및 안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마련 -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위기대응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하고,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함	의무·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신설 및 안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및 각종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 신설)

1) 이 법률안은 한병도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및 제34조)

-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추가하고, 현행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²⁾과 동일하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5조부터 제7조까지³⁾ 준용)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제9조⁴⁾ 준용)하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제10조⁵⁾ 준용),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제11조⁶⁾ 준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 3) 현행법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현행법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군·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 9. 그 밖에 시·군·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⑦ (생략)

현행법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 8. (생략)

③~⑦ (생략)

- 4) 현행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② ~ ④ (생략)

- 5) 현행법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도기본계획, 시·군·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6) 제11조(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권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권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입

- 개정안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1)」 제2조제11호의²⁷⁾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생활권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협약 이행과 생활권 구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⁸⁾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 등 협약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생활권을 설정하는 경우 현행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교육·의료·환경·복지·문화·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1)」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⁹⁾,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내용 및 지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권 설정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③, ④ (생략)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교육·의료·환경·복지·문화·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9)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9호)에 ‘관심지역’ 18곳([참고 2]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이와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참고 2]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9호)